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025. 9.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5-94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5년 8월 14일(목)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월)

2. 제출사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5. 12. 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융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거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다.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조, 제6조)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7. 10.~7. 30.(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성별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따라서 일부조례개정안 제7조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 제안
경제진흥과 의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 추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함. 다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검토보고

가. 개정목적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마포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융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융자대상 정의 명확화(제2조)**

- ‘중소기업자’ 범위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중소기업자로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

○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3조의2)**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존속기한) ---------- - 2030년 12월 31일---------. ---------- ---------- ----------

○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조, 제6조)**[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삭제(2021. 7. 27.)에 따른 인용 법령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

1)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조항이 2021년 7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해당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되었고, "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변경됨.

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기금 계좌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회계법」---------- 공무원에 관한 규정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제7조～제7조의 3)**

- 기금운용심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신설.

※ 가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안 반영, 경제진흥과는 수용 입장이나 전문인력 부족 시 예외 인정

- 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

다.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용어·구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불필요한 정의 조항(‘수도권’) 삭제.

- 띄어쓰기 및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삭 제>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1. 중소기업자 ---------- 기술개발자금을 위한 ----------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2. 중소기업자 육성 및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 중소기업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이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는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소속 공무원---------- ----------.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생략)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 기금 융자 신청------ ---------- ---------- ---------- ---------- ----------.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이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또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융자대상 정의 명확화는 지원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원 비율 규정과 성별 균형 원칙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확보·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포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중 ‘특별신용보증 융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기[2]된 바 있음.

- 현재 마포구는 특별신용보증 융자의 1차 지원 대상을 직능단체 소속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접수 초반 과도한 신청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음.

- 반면 타 자치구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신청순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마포구의 운영 방식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기금 운용 시에는 특정 직능단체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청 분산 문제는 직능단체 제한이 아니라 접수기간 운영 개선, 신청순 심사 적용, 심사 인력 확충 등 일반적인 행정 대안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마포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현황(남해석 의원 요구자료)

※ <특별신용보증 융자> 1차 지원대상 제한 사유 : 접수기간 초반 신청인원 집중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이를 분산하고자 1·2차 지원대상을 나누어 신청 접수

구분	특별신용보증
지원기간	(1차) 2025. 3. 4. ~ 4. 30. / (2차) 2025. 4. 1.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1차) 관내 유관(직능)단체 소속 소기업·소상공인 / (2차) 관내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신청방법	(1차) 소속 유관(직능)단체 사무국을 거쳐 신청 /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방문 신청

※ 특별신용보증 신청현황 (2025. 5. 15. 기준)

사업명	구분	신청 접수	대출 실행	비 고
특별신용보증	업체수	364개소	232개소	보증 심사 중이거나 보증 완료 후 대출 미실행 업체 수: 132개소
	금액	13,080,870천원	8,400,170천원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